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954

발의연월일: 2025. 2. 6.

발 의 자:김 윤·권향엽·이재관

박지원 • 한창민 • 이수진

박용갑 · 오세희 · 정진욱

이원택 · 정일영 · 전종덕

이재정 · 김문수 · 이광희

박선원 • 최민희 • 황명선

문금주 · 남인순 의원

(2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치의학 교육·연 구 및 진료 발전과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하지만, 현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보건 복지부와의 협력부족, 지역 의료 체계와의 연계성 저하, 성과 평가 제 도 부재,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,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하며,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

이고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조, 제7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2(성과평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병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, 그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시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 중 "11인"을 "20명"으로, "1인"을 "1명"으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중 "해당 치과병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,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(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) 및 대학병원장,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

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,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(이하 "당연직 이사"라 한다)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,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"를 "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"당연직 이사"라 한다)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"로 하며, 같은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-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해당 치과병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
- 2.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(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)
- 3. 관련대학의 대학병원장
- 4.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 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
- 5.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

- 6. 해당 대학병원의 제14조에 따른 임상교수요원 대표 2명
- 7. 해당 대학병원의 전공의 대표 2명
- 8. 3년 이상 재직한 치과병원 소속 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중에서 근로자 대표 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)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2명
- 9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
- 10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제12조제1항 중 "1인"을 "1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교 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제20조 전단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 제21조제1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 제22조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 제24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

-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.
- 제3조(당연직 이사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후 당연직이사를 임명할 당시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제9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.
 - ② 당연직 이사의 임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이 충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정관) ① (생 략)	제4조(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	②
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	<u>보건복지부장관</u>
받아야 한다.	
<u> <신 설></u>	제7조의2(성과평가) ① 보건복지
	부장관은 치과병원에 대하여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	라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
	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하
	<u> 여야 한다.</u>
	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
	따른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
	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
	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
	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
	의 제출이나 업무 수행상의 협
	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
	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
	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
	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
	하여야 한다.
	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병원
	에 대한 재정지원 시 제1항에

제9조(임원) ① 치과병원에 이사 저장을 포함한 이사 <u>11인</u>과 감사 <u>1인</u>을 둔다.

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 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 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, 관 련대학의 치과대학장(치의학전 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) 및 대 학병원장, 기획재정부장관, 교 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,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· 광역시 •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 장 또는 부지사(이하 "당연직 이사"라 한다) 및 이사회의 추 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, 당연직 이사 외 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 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

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
<u>수 있다.</u>
세9조(임원) ①
<u>20명</u>
1명
②
해당하는 사람(이하 "당연직
이사"라 한다)과 이사회의 추
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
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
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
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
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

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<u>포함되도록 한다</u>. <<u>후단 신설></u> <신 설>

<신 설>

<u><신</u> 설> 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1. 해당 치과병원장(이하 "원 장"이라 한다)
- 2.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(치의 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)
- 3. 관련대학의 대학병원장
- 4.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
- 5.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 는 부지사
- 6. 해당 대학병원의 제14조에 따른 임상교수요원 대표 2명
- 7. 해당 대학병원의 전공의 대 표 2명
- 8. 3년 이상 재직한 치과병원
 소속 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
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
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중
 에서 근로자 대표(근로자의
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

<신 설>

<신 설>

-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.
- ④ ~ ⑥ (생 략)
- 제12조(치과병원장) ① 치과병원 에 원장 1인을 둔다.
 - ② (생략)
 -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.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.
 - ④ ~ ⑦ (생 략)
- 제20조(사업계획 등 보고)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

	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
	표자를 말한다)의 추천이나
	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
	사람 2명
	9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자단
	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
	10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
	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
	③
	<u>보건복지부장관</u>
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	12조(치과병원장) ①
	<u>1명</u>
	② (현행과 같음)
	③
	<u>보건복지부장관</u>
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	20조(사업계획 등 보고)

지 <u>교육부장관</u>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도 또한 같다.

제21조(결산서의 제출 등) ① 원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「공인회계사법」 제 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 ·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22조(감독) <u>교육부장관</u>은 치과 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 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제24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교육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- <u>보건복지부장관</u>
•
제21조(결산서의 제출 등) ①
<u>보건복지부</u>
장관
 ② (현행과 같음)
제22조(감독) 보건복지부장관
제22 <u>年(구구) 도신국시구·6년</u>
제24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(2)
<u>보건복지부장관</u>